



제6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 개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제조, 수리 및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협회 내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서는 지난 5월 26일, 신무성 위원장 및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차 하도급분쟁조정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조정회의에 상정된 주요 분쟁사안과 그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조정 성립(7건)

● (주)도화종합기술공사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공사 타절로 인한 정산을 해주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을 210,000천원으로 정산 합의 · 지급하여 조정성립

● 광토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하도급대금 및 추가공사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계약조건에서 빌주처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규정한대로 이행키로 하여 조정성립

● (주)건화엔지니어링에 대한 제조하도급분쟁 건

- 설계변경 유보금 명목으로 하도급대금 중 10,000천원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 10,00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성립

● 고운종합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빌주처로부터 감액받았음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감액하고 동 사유로 기성금이 과지급되었다 하여 환불



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15,000천원으로 정산 합의·지급하여 조정성립

● 유림종합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을 42,000천원으로 정산 합의·지급하여 조정성립

● (주)동아토건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일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조정안대로 하도급대금을 17,600천원으로 정산 합의·지급하여 조정성립

● 부강종합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고 하자를 이유로 감액하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이나, 하자금액을 23,600천원으로 합의하고 정산 하도급대금 35,000천원을 지급하여 조정성립

◆ 조정 불성립(3건)

● 삼복토건(주)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신고인의 경영간섭 등에 의한 손해 발생을 이유로 양자가 체결한 신기술사용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한 공사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사안으로, 피신고인이 하도급대금 161,000천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거부하고, 신고인의 사건이첩 요구로 불성립

● 흥남종합건설(주)에 대한 건설하도급분쟁 건

- 발주처로부터의 감액내용에 따라 신고인에게도 동 비율대로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이를 부당하다 하여 발생한 분쟁사안으로, 신고인은 이미 잔여 하도급대금을 정산(23,100천원)하여 수령하였으면서도 추가금액을 요구하고 조정에 불응하여 불성립

● 범진기공(주)에 대한 제조하도급분쟁 건

- 피신고인은 신고인이 시공한 추가공사에 대하여 정산의무가 없다며 정산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사안으로, 공사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피신고인이 거부하고 신고인은 사건이첩을 요구하여 불성립

신규회원사 소개

회원가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오리엔탈정공

대표 서종석
제조업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 370-18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삼성전관



삼성SDI

삼성항공산업



삼성테크원

현대물류



현대택배

LG정밀



LG이노텍

SK옥시케미칼



SK에버텍

SK상사



SK글로벌

회원사 참여란 신설

아는 것이 힘!

궁금한 사항이나 모르는 내용은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본 협회에서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하여
자세히 답변해 드립니다.

회원사 제언란 신설

바람직한 공정거래제도 발전에 관한 회원사 여러분의 정책제언을 받습니다.
공정거래제도는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과 자율적인 준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제도입니다.
기업하기 쉬운 공정한 경쟁환경과 기업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도움이 될 여러분의
제언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관련 상담 코너 Q&A

공정거래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십니까?
새로이 제·개정된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의 명쾌한 해석이 필요하십니까?
본 협회는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공정거래 관련 상담코너를 신설합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문의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하도급 관련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